



제 429회 국회 (정기회)
제6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면접수당 지급 근거 신설 〉

■ 신장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2648호)

2025. 11.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 문 위 원 한 석 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면접수당 지급 근거 신설	3

I. 제안경위

2025년 9월 3일 신장식의원이 대표발의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2025년 9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구직자가 면접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교통비, 숙박비 등 다양한 비용이 소요되는데, 소득이 없는 구직자에게 이러한 비용은 상당한 경제적 부담이 되고 있음.

또한 면접수당은 단순한 실비 보전의 의미를 넘어, 구직자가 면접 준비와 참여에 투입한 시간과 노력을 존중하고 보상하는 성격을 지님. 채용 면접은 구직자의 자발적 요청이 아니라 구인자의 인력 수요에 따라 진행되는 절차인 만큼,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만 전가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음.

이에 채용 과정에서 면접을 시행하는 경우 구인자의 면접수당 지급과 지급 여부와 기준의 사전 통보를 의무화함으로써 채용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9조의2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신장식위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646호) 및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64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Ⅲ. 검토의견

1. 면접수당 지급 근거 신설

가. 개정안의 주요내용

개정안은 면접수당의 지급 근거를 신설하고(안 제9조의2 신설),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설>	제9조의2(면접수당의 지급) ① 구인자는 면접시험에 응시하는 구직자에게 수당(이하 “면접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구인자는 면접수당의 지급 방법과 지급 금액을 구직자에게 사전에 알려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면접수당의 기준 금액과 지급 방법은 면접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 대면 여부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과태료) ① ~ ③ (생략)	제17조(과태료) ① ~ ③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④ 제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면접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구인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⑤ -----제4항----- ----- ----- -----.
--	--

나. 검토의견

구직자가 면접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교통비, 숙박비 등 다양한 비용이 소요되며, 이는 청년층이나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상당한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그러나 채용 면접은 구직자의 자발적 요청이 아니라 구인자의 필요에 따라 진행되는 절차인 만큼,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으므로, 면접수당 지급 및 지급여부·기준의 사전통보를 의무화하여 채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¹⁾.

이에 개정안은 채용 과정에서 면접을 시행하는 경우 구인자의 면접수당 지급방법과 지급 금액의 사전 통보를 의무화하려는 것으로, 구직비

1) 참고로, 현재 면접수당에 대해 규정하는 별도의 법령은 없는 상황으로, 각 기업에 따라 면접비를 지급하는 사례가 있으며, 경기도, 대구광역시 등은 일부 지자체에서는 면접비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용 경감, 구직자의 노력에 대한 보상, 채용과정의 공정성 제고라는 측면에서 입법의 의의가 있다고 보임.

다만, 개정안은 구인자에게 면접수당 지급을 의무화하고 면접수당 지급 의무 위반에 대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구직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면접수당 기준 금액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설정할 것인지에 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고용노동부는 기업에 면접수당 지급을 의무화하고, 미지급한 기업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채용과정의 성격, 기존 법의 규율방향 등과 맞지 않을 수 있고, 면접수당 지급 의무화 시 비용에 부담을 느낀 기업이 면접 인원을 축소하는 등 부작용이 우려되며, 면접에 드는 비용은 기업 여건 및 채용 방식, 구직자 개인의 성향에 따라 다양할 수 있어 일률적으로 기준 금액을 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문 의 처
02)6788-5539